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담배에 대한 마약류 문구 사용 제한〉

■ 송언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115호)

2024.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담배에 대한 마약류 문구 사용제한 등(안 제25조의6 신설 등)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송언석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 2024. 9. 20.

다. 회 부 일 : 2024. 9. 2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담배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하 “오도문구”)에 대한 사용제한 규정을 두어 담배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나 위험을 경시하게 할 우려가 있는 오도문구를 담배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대마초향 등 마약류 명칭을 이용한 담배 광고가 등장하여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낮추고 마약을 단순 기호식품 정도로 인식하게 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기존의 오도문구뿐만 아니라 마약류 및 유사 용어 등에 대한 사용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담배의 포장이나 광고에 마약류의 명칭 또는 그와 유사한 용어, 문구 등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려는 것임(안 제25조의6 신설 등).

II. 검토의견

1. 담배에 대한 마약류 문구 사용제한 등(안 제25조의6 신설 등)

현 행	개 정 안
☐ 담배에 대한 마약류 문구 사용 제한 ☐ <신 설>	☐ 담배에 대한 마약류 문구 사용 제한 ☐ <u>제조업자 및 수입 판매업자는 담배의 포장이나 광고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또는 그와 유사한 명칭·용어·문구·상표·형상 또는 그 밖의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u> (안 제25조의6 신설)
☐ 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제27조제1항)	☐ 벌칙 ☐ <현행과 같음>
☐ <신 설>	☐ <u>제25조의6을 위반하여 마약류문구 등을 표시한 담배를 제조 또는 수입, 판매한 자</u> (안 제27조제1항제3호 신설)

개정안은 담배의 포장이나 광고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또는 그와 유사한 명칭이나 용어 등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현행법은 담배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나 위험을 경시하여 담배에 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게 할 우려가 있는 용어·문구·상표·형상 또는

그 밖의 표시(이하 “오도문구등”)을 담배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¹⁾하고 있음. 이에 따라 담배의 유해성을 잘못 판단하게 할 우려가 있는 ‘라이트 또는 light’, ‘연한, 마일드 또는 mild’, ‘저타르 또는 low tar’, ‘순 또는 純’ 등의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²⁾.

하지만 담배보다 더 엄격하게 관리될 필요성이 있는 마약류 문구등을 담배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고 있지 않아 액상형 전자담배 등에 ‘합법대마’, ‘대마향 구현’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광고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³⁾.

대마의 향을 표방해 액상 전자담배를 광고할 경우, 대마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고 대마에 대한 거부감을 감소시켜 사회적으로 대마 흡연을 조장할 우려가 있음. 식품의약품안전처 역시 대마향 표방 액상 전자담배를 구매·판매·광고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대마흡연을 조장할 우려가 있으므로 대마향 표방 액상 전자담배를 구매·판매·광고하는 것

1) 「담배사업법」 제25조의5(담배에 대한 오도문구 사용제한) ①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담배의 포장이나 광고에 담배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나 위험을 경시하여 담배에 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게 할 우려가 있는 용어·문구·상표·형상 또는 그 밖의 표시(이하 “오도문구등”이라 한다)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오도문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10조의2(오도문구등의 범위) ① 법 제25조의5제2항에 따른 오도문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어·문구·상표·형상 또는 그 밖의 표시로 한다.

1. 라이트 또는 light

2. 연한, 마일드 또는 mild

3. 저타르 또는 low tar

4. 순 또는 img18981416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내용을 기호, 도형, 그림,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하여 표시함으로써 담배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나 위험을 경시하여 담배에 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게 할 우려가 있는 것

3) ‘“대마향 구현” 액상담배 버젓이 판매...“마약 호기심 자극 우려”’, 동아일보, 손준영·김소민 기자, 2023.11.17.,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31116/122222035/1>

은 안됨을 명시하고 있음⁴⁾.

대마 등 마약류 문구를 통한 담배 광고를 금지함으로써 담배 광고가 마약류에 대한 거부감을 감소시키는 문제와 대마 흡연 등의 불법적 행위의 시발점이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임.

더욱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의⁵⁾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은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하지 아니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중독성·소비방법·효과 등에서 마약과의 유사성이 담배보다 훨씬 작은 식품에 대해서도 마약류 문구를 사용한 광고를 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담배에 대해서 마약류 문구를 활용한 광고를 금지하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봄.

다만, 「담배사업법」 담배에 대한 광고 제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오도문구를 사용하여 담배를 광고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⁶⁾하고 있는 바, 형벌의 형평성 측면에

4)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식블로그, <https://blog.naver.com/kfdazzang/223601835064?trackingCode=rss>

5)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의2(마약류 표시·광고 영업자 등에 대한 권고)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영업자 등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중 마약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하지 아니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6) 「담배사업법」 제27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의3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담배제조업의 양도·양수 등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의5제5항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서 마약류 용어를 활용하여 광고하거나 표시한 경우에 대해서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닌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봄.

[담배사업법상 광고·표시 규정 위반 제재]

위반 사유	처벌 근거	형량
담배에 관한 경고문구 표시 및 광고 제한 위반	「담배사업법」 제25조 및 제27조의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담배 성분 표시 위반	「담배사업법」 제25조의2 및 제27조의 2	
오도문구등 표시 제한 위반	「담배사업법」 제25조의5 및 제27조의 2	

한편, 대마 등 마약류 문구를 활용한 광고는 대부분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바,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된 액상형 전자담배로 담배 정의를 확대하는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안_의안번호 01749, 김태년의원안_의안번호 02471, 김선민의원안_의안번호 02563, 남인순의원안_의안번호 02872, 한지아의원안_의안번호 2898)과 함께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기획재정부는 담배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가지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에 대해서는 이미 「담배사업법」 제25조의5에 따라 사용을 제한 중이고 마약류 또는 유사 명칭에 대한 사용 제한도 별도의 규정 신설

-
3. 제11조의6제3항에 따른 화재방지성능인증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자
 - 3의2.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특수용 담배를 다른 용도로 판매한 자
 4. 제25조제1항에 따른 경고문구가 표시되지 아니하거나 이를 위반한 경고문구를 표시한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5.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담배에 관한 광고를 한 자
 6.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성분과 그 함유량이 표시되지 아니하거나 각 성분의 함유량을 거짓으로 표시한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7. 제25조의5를 위반하여 오도문구등을 표시한 담배를 제조 또는 수입한 자

없이 현행 시행령에 문구를 추가하여 규제가 가능하므로 개정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 설></u> 제2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2. (생략) <u><신 설></u> ②·③ (생략)	제25조의6(담배에 대한 마약류문구등 사용제한) ①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담배의 포장이나 광고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또는 그와 유사한 명칭·용어·문구·상표·형상 또는 그 밖의 표시(이하 “마약류문구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마약류문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벌칙) ① ----- ----- ----- -----. 1. 2. (현행과 같음) 3. 제25조의6을 위반하여 마약류문구등을 표시한 담배를 제조 또는 수입, 판매한 자 ②·③ (현행과 같음)

문의처

02)6788-5150